

## 6·25전쟁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92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은혜 · 김선교 · 김상훈  
서천호 · 엄태영 · 김기현  
최수진 · 고동진 · 김소희  
정성국 · 최형두 · 조배숙  
박성훈 · 이양수 · 곽규택  
권영진 · 조승환 · 윤상현  
신동욱 · 정동만 · 박수민  
의원(21인)

### 제안이유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해 발발한 전쟁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호국 영웅들이 피 흘려 싸웠던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역사임.

그러나 6·25전쟁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중국이 6·25전쟁 불법 개입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을 비롯해,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 논란 등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및 정치 선동 등이 반복되면서 6·25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이 위

협받고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호국의 역사가 한 치의 흔들림없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6·25전쟁”이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안 제2조).
- 나.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

## 6·25전쟁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6·25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6·25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6·25전쟁의 정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2.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

구 분	번호	지 역 명	기 간
육 군	1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 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용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8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9	6·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제1, 3, 8경비대대)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해 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 작전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 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용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 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2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경 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